

日本漁港의 維持管理 ⑬

不許可 處分 不服 申請 가능

1. 불복신청이란

어항법 혹은 이에 근거한 명령 또는 어항관리규정에 의하여 행한 어항관리자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농림수산 대신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어항법 제43조제1항)

심사청구는 행정불복심사법(이하「심사법」이라한다)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한 형식으로, 처분청의 상급행정청에 대하여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속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심사법 제14조) 다른 법률등(이 경우는 어항법)에 구두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지 않은 한 서면(정.부2통)으로 제출하여야 한

다. (심사법제9조)

심사법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또 하나의 형식으로서 이의신청이 있으나 이것은 처분청에 상급행정청이 없을 때 혹은 처분청이 주무대신인 때 등의 경우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서(심사법제6조) 어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어항법 혹은 이에 근거한 명령에 의하여 행한 농림수산 대신의 처분에 대한 것이다. 그 수속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의 경우와 거의 같다. (심사법제9조, 제45조)

2. 불허가등의 처분을 행하는 경우

어항에 관한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심사법에 의하는 외에 어항법에 그 특례가 정하여져 있으나(어항법제43조) 이 특례

이외는 모두 심사법이 적용되므로 불복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소정의 교시(教示)가 필요하다.

즉, 행정청은 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불복신청을 할 행정청, 불복신청의 기간을 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심사법제57조 제1항)

또 행정청이 처분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불복신청에 관하여 교시를 구한 경우에는 그자에게 필요사항을 교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심사법제57조제2항)

이 경우의 교시의 방법은 서면으로도 구두로도 좋으나 서면으로 교시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서면으로 교시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심사법제57조 제3항)

교시는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으나 잘못된 교시를 하는 때도 있고 또 행정청이 불복신청을 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교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행정청이 잘못된 교시를 한 경우 및 교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구제조치가 강구되어 있다. 즉, 잘못된 교시를 한 경우에는 교시된대로의 수속을 채택하면 구제되며(심사법제18조, 제19조, 제46조) 교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분청에 불복신청을 하면 좋도록 되어 있다. (심사법제58조)

3.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어항법 혹은 동법시행령 또는 어항관리규정에 따라 처분



에 대한 심사청구(도도부현지사 또는 어항관리자의 처분) 또는 이의신청(농림수산대신의 처분)이 있는 경우, 농림수산대신은, 어항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존중하여 재결 또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어항법제43조제2항)

여기에서 재결이라 함은 심사청구에 대한 상급행정청의 처분을 말하며 결정은 이의신

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을 말한다. (심사법제40조, 제47조)

어항심의회는 불복신청에 관하여 의견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 장소를 통지하여 심사청구인, 이의신청인 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공개적인 청문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어항법제43조제3항)

漁港審議會·知事委任事項·

市町村등의 手續

1. 어항심의회의 개요

가. 권한(자문사항등)

어항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기타 어

항행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대신의 감독에 속하는 자문기관으로서 어항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어항법제7조제1항,

제4항)

어항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즉 농림수산대신이 어항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또는 그 심의를 거치

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은 각각 관계되는 항목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1) 어항의 지정, 지정내용의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동법제5조제1항)
- 2) 어항지정내용의 경미한 변경 기준의 설정(동법제5조제2항)
- 3) 어항정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동법제17조제1항, 제3항)
- 4) 어항수축사업 시행의 허가기준의 설정(동법제19조제2항)
- 5) 어항수축사업 시행의 허가에 관계되는 권리 양도의 인가 및 어항수축사업시행의 위탁의 허가기준 설정(동법제21조제3항)
- 6) 어항관리자 지정기준의 제정(동법제25조제1항)
- 7) 어항관리회 의원의 정수 변경(동법제28조제5항)
- 8) 어항관리회 위원선임에 관계되는 어항관계구역의 설정(동법제28조제6항)
- 9) 모범어항관리규정예의 제정(동법제34조제4항)
- 10) 어항구역외의 시설을 어항 시설로의 간주(동법제40조)
- 11)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결정 및 청문회의 개최(동법제40조제2항, 제3항)

어항심의회는 이외에 어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 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행정과의 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어업

조정 심의회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되어있다. (동법제7조제2항, 제3항)

나. 위원의 임명 및 임기등
어항심의회의 위원은 어항의 정비, 어항의 수축에 관한 기술, 어항의 운영 또는 어업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중·참·양의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어항법 제9조제1항) 위원의 수는 9명(동법제8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동법제10조제1항)

다. 의결 및 조사등

어항심의회의 의사, 의결에는 위원과 반수의 출석이 필요하며 의사는 회장을 제외한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어항법제13조제1항, 제2항)

어항심의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항관계자 또는 그 단체등에 대하여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두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기관계자 등에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동법제13조제3항, 제4항)

그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어항심의회가 정하도록 되어있어(동법제16조) 이 규정에 의거하여 어항심의회 운영규정이 정해져 있다.

이 운영규정에 있어서는 회의를 정례회의(원칙적으로 2개

월에 1회 개최)와 임시회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로 나누어 회의 소집수속, 의사의 운영방법, 의사록의 작성방법과 그 비치, 공개, 서무 등이 정해져 있다. (1950.8.28 제1회 어항심의회의결)

2. 지사에게 위임된 사무

어항법에서 정한 농림수산대신의 직권 일부는 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 또는 시정촌장에게 실행하게 할 수 있다. (어항법제44조)

이 규정에 의거한 정령에서는 농림수산대신의 직권은 도도부현지사에게만 위임되어 있고 시정촌장에 위임된 것은 없다.

이 규정에 의한 도도부현지사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제148조제2항 별표 제3의 92에 도도부현지사가 관리 및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다.

개개의 위임사항에 대하여는 각각 관계되는 항목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어항법시행령제21조)

① 도도부현 이외의 어항수축 사업의 시행자가 어항수축 계획을 정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수면에 들어가는 경우의 허가

② 도도부현 이외의 어항수축 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지시

③ 도도부현 이외의 어항수축 사업의 시행자 또는 어항관리자가 어항수축사업의 시행 또는 어항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 수면
에 들어거나 또 이것을 사
용하는 경우의 허가

- ④ 도도부현 이외의 자가 시행
하는 어항수축사업의 사업
완료의 인정(농림수산대신
에 보고를 요함)
- ⑤ 제1종어항 및 제2종어항(농
림수산대신이 지정하는 것을
제외)에 대한 어항관리자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취소
에 대한 공청회의 개최(농림
수산대신에 보고를 요함)
- ⑥ ⑤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
가 어항관리자를 지정한 경
우에 있어 당해어항의 어항
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
의 인가(농림수산대신에 보
고를 요함)

⑦ 어항시설의 처분의 허가(어
업용 통신시설에 관한 허가
및 도도부현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형질, 소재장소의 변경 또
는 수거에 관한 허가를 제
외)

⑧ ⑦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⑨ 기본시설의 이용방법, 이용
료의 요율의 인가(도도부현
이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
는 경우를 제외)

⑩ 도도부현이외의 자에 대한
어항구역내의 수역 또는 공
공공지에 있어서의 공작물
의 건설등의 허가

⑪ ⑩에서 도도부현지사가 허

가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조건의 부가

- ⑫ 어항구역내의 수역 또는 공
공공지에 있어서의 공작물
의 건설등에 대한 협의(당
해 행위를 하고자하는 자가
도도부현인 경우를 제외)
- ⑬ ⑩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
의 허가를 받은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또는 회복등의
명령
- ⑭ ⑩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
의 허가를 받아야 할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중지, 원
상회복등의 명령
- ⑮ 도도부현 이외의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토지등
에 대한 위해방지 시설명령
- ⑯ ⑩에 의하여 도도부현지사
가 허가한 경우(토사의 채
취 또는 점용에 관계되는
것에 한함)에 있어서의 어
항관리자의 장에 대한 통지
- ⑰ 어항수축사업의 시행자 또
는 어항관리자 등으로부터
의 보고, 자료의 징수, 사
업장의 출입, 검사등

3. 시정촌 등이 수속을 하는 경우

어항법 또는 동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정촌 또는 수산업
협동조합이 농림수산대신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당해 단체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
사를 경유하여 제출하도록하여
도도부현지사의 지도 감독의
강화를 꾀하고 있다. ❶